

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-18
- 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
## 2. 개정이유

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

## 3. 주요내용

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(안 제3조의2, 부칙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기획예산과 : 규제심사
  - 2) 감사담당관 : 부패영향평가

3) 가족정책과 : 성별영향평가

라. 입법예고(2020. 3. 10. ~ 3. 30) 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3조2에서 한시기구로써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두고
  - 부칙 안 제2조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하였음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
-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6월30일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- 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,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